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정관

개정 2009. 12. 17
개정 2011. 01. 01
개정 2012. 11. 01
개정 2013. 01. 01
개정 2013. 01. 21
개정 2013. 03. 14
개정 2014. 01. 24
개정 2014. 03. 20
개정 2014. 09. 25
개정 2015. 06. 08
개정 2016. 01. 15
개정 2016. 03. 16
개정 2016. 06. 20
개정 2017. 01. 05
개정 2017. 03. 07
개정 2018. 07.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재단은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재단은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약칭 HCF)이라 표기한다.(개정 2009. 12. 17)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에 둔다.(개정 2011. 01. 01)(개정 2014. 03. 20)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6. 06. 20)(개정 2017. 03. 07.)

1.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2.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보급 및 교육
3.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4. 문화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삭제 2017. 01. 05.)
6. (삭제 2017. 01. 05.)
7. 위탁사업의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9.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10. (삭제 2018. 07. 12.)
11. 미디어센터 관리 및 운영
12.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13. 문화재단 설립목적에 맞는 화성시장이 수행하는 사업
14. 영화관 운영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④ 재단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4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보통재산으로 편입

할 수 있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기업의 협찬금, 재단의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다음 해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제1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4. 09. 25)

② 재단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9. 25)

제13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감사 및 보고) ① 재단은 매년 초 기본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시장이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거나 필요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 및 지도 감독 등의 결과 시장이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면, 지체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5인 이내(개정 2017. 01. 05)
4. 감사 2인
5. (삭제 2017. 01. 05)

② 제1항 제3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개정 2017.01.05.)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결원일 때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적임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01. 05)

④ 이사회 이사 구성 시 화성시가 재산을 출연하여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와 중복하는 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회 인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1. 01. 01)

제17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개정 2016. 01. 15)

②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01. 15)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01. 05)

다만,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 03. 20)

④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과 시(市) 문화재단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⑤ 감사 2인은 선임직 감사 1인과 당연직 감사 1인으로 구분하되,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선임하고 이사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감사는 시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6. 01. 15)

⑥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1. 공무원 4급 이상 근무한 사람
2. 공무원 5급으로 5년이상 경력소지자(개정 2015. 06. 08)
3. 화성시문화재단에서 2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4. 상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 사람
5. 문화예술 및 예술단체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 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

- 6. 저명한 문화예술인으로써 예술경영의 능력을 겸비한 사람
- 7. 그 밖에 임명을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4. 03. 20)
- ⑦ (삭제 2017. 01. 05)

제1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대표이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당해 재단의 부서장이 된다.(신설 2014. 03. 20)

제17조의3(임원의 결격사유)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 07. 12.)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②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2014. 03. 20)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06. 08)(개정 2017. 01. 05)

-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직 이사를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 만료일은 기 위촉한 선임직 이사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다시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2. 재단의 운영과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요구 및 시장에게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제21조(임원의 보수) 재단의 상임임원에 대한 보수는 보수규정으로 정하고, 상임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2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 정족수 등)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제25조(의결제척 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6조(이사회 소집) ① 정기 이사회는 연1회,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제20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4. 대표이사가 재단운영상 긴급하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판단한 경우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사록)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이사 1인과 감사 1인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조직 및 구성 인원

제28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조직 및 정원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 01. 01) (개정 2016. 03. 16)

② (삭제 2016. 03. 16)

제29조(직원의 임면 등)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연간 임면(任免)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전년도 내용을 분석·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채용방법)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 할 수 있다.(개정 2015. 06. 08)

제30조(공무원 파견요구 등) 재단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고문) ① 이사장은 문화예술계인사,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복지 관련 전문가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 01. 05)

②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문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고문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수석고문을 위촉할 수 있고, 수석고문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수석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자문기구) ① 이사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두고 1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 및 직제, 보수, 인사, 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정관의 경우는 시장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의2(성과평가) ①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시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대표이사는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각종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시의 성과평가 결과를 대표이사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해산)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의 사유로 재단을 해산할 경우 (파산 및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이사회 의결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36조(공고방법) 재단이 공고할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06. 08)

제37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관할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재단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재단 설립을 위하여 설립받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업계획 등)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설립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당초의 임원) 재단 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지 2”와 같다.

제6조(설립받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3”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부칙 (2009. 12. 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관할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1. 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1. 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1.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3.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1.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3.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9.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6. 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1.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3.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1. 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3. 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7. 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2016. 03. 16)

별표[2] (삭제 2016. 03. 16)